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정이유

- 가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
(2014.12.30)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
- 나.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동별 기 위촉된 복지위원들을
제정비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
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 목적(안 제1조)
- 나. 복지위원의 위·해촉, 임기, 정수, 직무, 의무 사항 기재(안 제2조~제7조)
- 다. 복지위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회의, 수당, 증표교부 등 규정(안 제8~제11조)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 제44조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구미시 복지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2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된 경우

제5조(정수) 위원의 정수는 읍·면·동별 2명으로 하고, 인구 3만 명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.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늘어나는 경우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직무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보장 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2.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보장관계 행정기관, 사회보장시설, 그 밖의 사회보장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, 신고 및 결연, 후원, 자원봉사 등 협력
5. 지역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제안
6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제7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

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.

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회의) 시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)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증표교부) 시장은 위원에게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) 시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4조(복지위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 단위로 읍·면·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복지위원의 자격, 직무,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9조(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)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·면장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
2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복지위원은 읍·면·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.

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

2.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.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

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최 한 주
	담 당	박 용 자
	담 당 자	여 정 배 (480-5162)